

점자 규격 표준화 사업의 필요성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점자의 시초가 된 것은 프랑스 군대에서 야간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당시 육군 장교였던 바르비에(C. Barbier)가 세로로 6점, 가로로 2점, 총 12점으로 고안한 야간 문자였으나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바르비에 장교는 이 문자가 시각 장애인에게 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파리 맹학교에 이를 소개하였다. 파리 맹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각 장애인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는 이를 쉽게 배웠고 시각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12점의 야간 문자를 세로 3점, 가로 2점, 총 6점의 점자로 1824년 재탄생시켰다. 이후 브라유는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등을 점자로 제작하여 발표하였고, 브라유의 이름을 딴 ‘브라유 문자’ 또는 브라유의 영어 발음인 ‘브레일’로 불리게 되었다.¹⁾

이후 프랑스에서 점자가 시각 장애인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된 후

1) 김영일(2016) 외,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점자 규격 표준 개발》, 국립국어원.

세계 각국에서 점자를 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논쟁이 거듭되었고, 특히 미국에서는 점자의 채택을 놓고 4점으로 할 것인지 6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점자가 도입된 것은 1898년경으로, 미국 선교사인 홀이 뉴욕 포인트(4점) 점자를 변형한 평양식 점자를 고안하여 여러 성경을 점역한 것이 한국 점자의 시초이다. 그러나 4점 점자의 한계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지 않았으며,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반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글 점자 시대를 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7년 ‘훈맹정음’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된 것을 시작으로 1959년에는 《점자 악보 기록법》이라는 번역물이 발간되어 최초로 악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63년 4월 8일에는 서울맹학교 이성대 교사에 의해 고문자의 점자가 발표되었다.

점자 연구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에서는 1982년 교육부로 하여금 ‘한국 점자 통일안 제정’을 교육 정책 과제로 정하게 하여 김승국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였고, 11명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1983년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에서는 1989년 7월 전국 맹학교와 맹인 복지 기관, 점자 도서관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점자위원회’를 결성하고 표준 한글 점자를 채택할 것에 합의하였다.

1993년 문화체육부와 엘지복지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점자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임안수 교수와 35명의 연구 위원을 중심으로 『개정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마련하고 한글 점자, 고문 점자, 수학 및 과학 점자, 점자 악보, 컴퓨터 점자 기호, 점자 국악보를 개정하였으며, 13개국의 외국어 점자를 수집, 정리하는 등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²⁾

2) 김영일(2016) 외,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점자 규격 표준 개발》, 국립국어원.

이 위원회는 1994년 1월 컴퓨터 분과, 수학 분과, 음악 분과별로 위원회를 두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11월 4일 ‘개정 한국 점자 통일안’을 발표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7년 12월 17일 문화체육부에 의해 ‘한국 점자 규정’이 고시되었다. 이후 ‘한국 점자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2006-39호),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2017. 3. 28.)]이 고시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 점자 규정은 기본 원칙으로 “점자는 총 6점(세로축 3, 가로축 2)으로 한 칸을 구성하고, 조합하여 만드는 63개의 점형으로 적고, 점자 표기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문서 작성을 위한 점자의 논리적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점자를 제작하기 위한 외형적 특성(점의 높이, 점의 지름, 점과 점 간의 간격,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줄과 줄 간의 간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거, 점자에 대한 인쇄 기술이나 여러 분야에서 점자가 활용되지 않던 시기에는 점자 자료의 대부분이 종이책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점자 제작 또한 정형화된 도구(점자판, 타자기, 점자 인쇄기, 점자 프린터 등)를 사용함으로써 외형적 규격 마련의 필요성이 낮았다. 그러나 점자가 종이책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편의 시설,약품, 식음료,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제작 기법 또한 전통적인 천공 방식에서 벗어나 부식형, 금형, 도포형, 유브이(UV) 코팅형 방식 등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점자를 인쇄하여 사용하기 위한 매체도 종이류(인쇄용지, 스티커 등), 금속류(알루미늄, 아연, 스테인리스 등), 폴리염화 비닐(PVC)류 등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점역 방식, 매체, 제작자의 전문성에 따라 점의 높이, 점의 지름, 점과 점 간의 간격,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줄과 줄 간의 간격 등이 달라 실제 제작된 점자물을 시각 장애인이 거의 사용할 수 없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캔 음료에 인쇄되

어 있는 점자의 경우 점의 높이도 0.1~0.2mm 정도로 매우 낮을뿐더러 점과 점 간의 간격도 매우 좁게 되어 있어 인지가 쉽지 않다. 또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종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점자 관련 안내판과 점자 표지판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2005년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제정으로 교통 시설 및 교통편 등에 점자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나 권장 사항이 되면서 각종 시설에 점자 안내판 및 표지판 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자물의 규격이 저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 장애인들에게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 전국의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 기관 및 시설의 시각 장애 관련 편의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시각 장애인의 비율은 27.8%로 매우 낮았다. 낮은 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는 인지 및 식별의 어려움인데, 이는 편의 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점자의 규격이 제각각인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된 점자 규격을 정하고 이를 활용한 점자 자료가 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표시되는 점자만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자에 대한 물리적 규격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 등의 점자 표시가 시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없는 부식형 점자를 사용하거나, 흑여반구형으로 제작하더라도 점의 높이, 점과 점 간의 간격,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등이 적절하게 제작·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통하여 점자의 물리적, 외형적 규격을 정의함으로써 점자 인쇄기, 점자 정보 단말기 등에서 이러한 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점자 인쇄물이나 점자 표지판 등 편의 시설에 관한 점자 제작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어디서나 규격화된 점자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또한 유럽 국가들은 약품 용기 등에 점자 라벨 부착 등의 정보 접근을 통한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각 장애인이 일상생활 등에서 점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관련 규정의 정비뿐만 아니라 점자 제작을 위한 규격을 표준화하여 점자 생산자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국의 점자 관련 규격 비교

2.1. 미국의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점자 규격

미국장애인법과 건축상 장애물 관련 접근성을 위한 지침(ADA - ABA)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의 규격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호텔 등 숙박업소나 공공시설에 점자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규격을 살펴보면 「ADA & ABA Accessibility Guidelines」에서 점자에 관한 외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김영일(2016) 외,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점자 규격 표준 개발》, 국립국어원.

표 1 「ADA & ABA Accessibility Guidelines」 점자 규격

점의 높이	점의 지름	점과 점 간의 간격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줄과 줄 간의 간격
0.6~0.9mm	1.5~1.6mm	2.3~2.5mm	6.1~7.6mm	10~10.2mm

이 규정을 보면 점의 높이는 0.6~0.9mm, 점의 지름은 1.5~1.6mm, 점과 점 간의 간격은 2.3~2.5mm,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은 6.1~7.6mm, 줄과 줄 간의 간격은 10.0~10.2mm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최소, 최대 규격을 범위로 정함으로써 제작 특성이나 매체를 고려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점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해독력을 보장하고 있다.

2.2. 유럽의 점자 관련 규격(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의 점자 관련 법제의 특징은 약품 용기에 대한 점자 라벨 부착과 같이 정보 접근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중 영국과 프랑스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유럽 공동체(EC) 집행 위원회(Directive Committee)가 정한 지침 2001/83/EC(제56a조)에 따라 의약품 규정 2012/1916의 내용을 개정하여, 사람이 복용하는 약품의 용기 및 포장지에 해당 제품의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리플릿 역시 시각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를 포함한 전용 기록 방식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프랑스 역시 「인간 용도의 의약품에 관한 유럽공동체법(Community Code

4) 강완식(2015) 외, 《시각장애인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의약품 구분 및 정보 제공 강화 실용화 모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제56조의 2 및 「공중 보건 법전(命令大典) 제R5121-138조」를 통해 사람이 복용하는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점자로 제품의 명칭, 용량, 조제 형태, 대상자(영아, 아동 또는 성인) 등을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유럽 등지에서 의약품에 점자를 표기하고 있는데, 표기 기준은 ‘마버그 미디엄 점자 표준’이다.

○ 마버그 미디엄 점자 표준

마버그 미디엄 점자 표준은 점의 높이를 규정하지 않고 점의 직경, 점간, 자간, 줄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 포장 유럽표준화위원회(CEN,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표준은 점 높이 목표를 0.20m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점자를 약품 등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 점의 직경은 1.3~1.6mm
- 점과 점 사이 간격은 점 중심에서 점 중심까지 2.5mm
- 문자와 문자 사이 간격은 점 중심에서 점 중심까지 6.0mm
-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10.0mm

2.3. 기타 점자 관련 표준

미국, 영국, 프랑스 외에도 다양한 국가나 기관 등에서 점자 관련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5) 강완식(2015) 외, 《시각장애인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의약품 구분 및 정보 제공 강화 실용화 모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2 주요 점자 생산 국가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점자 크기

(단위: mm)

국가 및 기관	수평 점 간격	수직 점 간격	셀 간격	줄 간격	점 기본 직경	점 높이
미국 의회 도서관	2.5	2.5	6.25	10.0	-	0.5
미국 국립시각장애인 도서관	2.28	2.28	6.09	10.16	-	0.5
미국 표준 표시	2.3-2.5	2.3-2.5	6.4-7.6	10.0-10.1	1.5-1.6	0.6-0.9
호주 표시	2.29-2.50	2.29-2.54	6.00-6.10	10.16-10.41	1.40-1.50	0.46-0.53
캘리포니아 표시	2.54	2.54	5.08	-	-	0.64
이시엠에이 (ECMA) 유로 점자	2.5	2.5	6.0	10.0	1.3	0.5
전자 점자	2.4	2.4	6.4	-	-	0.8
잉글리시 인터라인 (English Interline)	2.29	2.54	6.00	12.70	1.4-1.5	0.46
잉글리시 인터포인트 (English Interpoint)	2.29	2.54	6.00	10.47	1.4-1.5	0.46
잉글리시 자이언트 닷 (English Giant Dot)	3.25	3.25	9.78	17.02	1.9	0.81
인라지드 아메리칸 (Enlarged American)	2.54	2.54	7.24	12.70	-	-
인핸스드 라인 스페이싱 (Enhanced Line Spacing)	2.29	2.29	6.1	15.24	-	-
프랑스	2.5-2.6	2.5-2.6	-	>10	1.2	0.8-1.0
독일	2.5	2.5	6.0	10.0	1.3-1.6	≥0.5
국제 건축 기준	2.5	2.5	6.1-7.6	10.0-10.1	1.5-1.6	0.6-0.9
이탈리아	2.2-2.5	2.2-2.5	-	-	1.0	0.5
일본	2.13	2.37	5.4	13.91	1.43	0.5
점보 아메리칸 (Jumbo American)	2.92	2.92	8.76	12.70	1.7	0.53
한국	2.0	2.0	5.0	6.0	1.5	0.6
라트비아	2.5	2.5	5	10.0	1.6	0.45
마버그 미디엄	2.5	2.5	6.0	10.0	1.3-1.6	-
마버그 라지	2.7	2.7	6.6	10.8	1.5-1.8	-
포르투갈	2.29	2.54	6.0	10.41	1.4	-

국가 및 기관	수평 점 간격	수직 점 간격	셀 간격	줄 간격	점 기본 직경	점 높이
스몰 잉글리시 (Small English)	2.03	2.03	5.38	8.46	1.4~1.5	0.33
스페인	2.5	2.5	6.0	10.0	1.2	-
미국 표준	2.34	2.34	6.22	10.16	1.45	0.48
스웨덴	2.5	2.5	6.0	10	1	0.25

2.4. 우리나라 점자 관련 규격

2.4.1. 현행 규격

한국 점자 규정에서는 점의 외형적, 물리적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엘리베이터 점자 표기에 한하여 ‘한국산업규격(KS) 엘리베이터 점자 규격(KS B 6895 엘리베이터 점자 표기)’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미국 등의 규정을 참고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편의 시설 설치 지침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설치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한국산업규격(KS) 엘리베이터 점자 규격’을 지켜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안내판이나 표지판 등의 제작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규격이 없어 제각각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 규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미국의 미국장애인법(ADA) 지침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격에서는 돌출 형태를 부식형이 아닌 반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표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 규격

점의 높이	점의 지름	점과 점 간의 간격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줄과 줄 간의 간격
0.6~0.7mm	1.5mm	2.5mm	4~6mm	5~5.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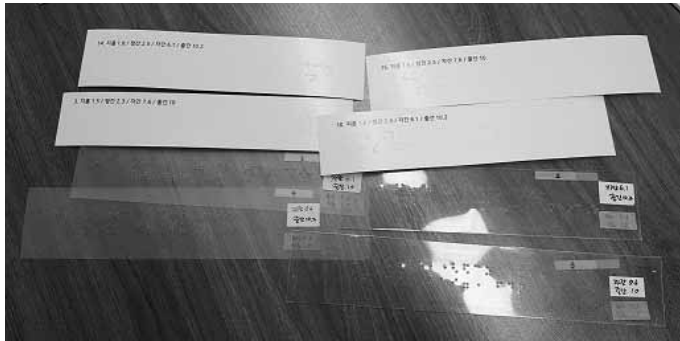
점자 인지도 테스트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점자 규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 과정과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은 점자를 습득할 수 있는 서울 지역의 시각 장애인 성인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자에 대한 숙련도 및 점자 습득 시기, 실명 시기 등을 설문하고 실질적으로 점자 숙련 정도를 분당 점자 해독 능력으로 평가하여 숙련자와 미숙련자로 구분하였으며, 숙련자보다 미숙련자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도구는 점의 높이(0.6~0.9mm), 점의 지름(1.5~1.6mm), 점의 간격(2.3mm~2.5mm), 자간의 간격(6.1mm~7.6mm), 줄간의 간격(10mm~10.2mm)을 미국장애인법(ADA)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다. 또한 자간의 간격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6.5mm, 6.9mm, 7.3mm의 중간 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이(일반적인 인쇄물에 사용),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편의 시설 점자 표지판 및 안내판에 사용), 폴리염화 비닐(PVC: 편의 시설 점자 표지판 및 안내판에 사용), 스티커(표지 점자 표기 등에 사용), 유브이(UV: 약품 등에서 많이 사용) 등 다섯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제작상의 문제로 인하여 종이 매체의 경우 점의 높이는 정밀한 타공이 불가능하여 도구를 만들 수 없었으며, 알루미늄, 폴리염화 비닐(PVC), 스티커의 경우도 기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점의 간격에 대한 제작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이번 평가를 위한 일상적인 점자 인쇄 방식의 규격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4 점자 규격 평가를 위한 매체별 도구

1 점자 규격 샘플(종이)	2 점자 규격 샘플(스테인리스)
	
3 점자 규격 샘플(폴리염화 비닐, 스티커, 유브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매체별로 인지 정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브이(UV) 매체의 경우만 인지 정도가 타 매체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의 높이, 점의 지름, 점의 간격, 글자의 간격, 줄의 간격 5개 변인 중 타 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간 변인에서 6.1mm과 7.6mm 사이에 인지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7.6mm의 경우 6.1mm에 비해 두 배 정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매체별 인지율 총량

종이								
구분	지름		점 간		자간		줄 간	
수치(mm)	1.5	1.6	2.3	2.5	6.1	7.6	10	10.2
인지(명)	136	132	152	116	175	93	133	135
스티커								
구분	높이		지름		자간		줄 간	
수치(mm)	0.6	0.9	1.5	1.6	6.1	7.6	10	10.2
인지(명)	157	149	181	125	202	104	150	156
폴리염화 비닐(PVC)								
구분	높이		지름		자간		줄 간	
수치(mm)	0.6	0.9	1.5	1.6	6.1	7.6	10	10.2
인지(명)	142	136	163	115	192	86	145	133
알루미늄								
구분	높이		지름		자간		줄 간	
수치(mm)	0.6	0.9	1.5	1.6	6.1	7.6	10	10.2
인지(명)	146	131	185	92	196	81	148	129
유브이(UV)								
구분	지름		점 간		자간		줄 간	
수치(mm)	1.5	1.6	2.3	2.5	6.1	7.6	10	10.2
인지(명)	95	94	89	100	145	44	101	88

또한 숙련도별 인지율 차이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숙련도별 인지 정도에서도 다른 변인에 비하여 자간 변인에 대한 인지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점자 규격을 표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이 매체나 스티커 매체와 같이 점자 타공 시 매체 자체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체의 경우 자간에 대한 규정을 7.6mm 규격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등은 점자 타공 시 매체 주변의 변형으로 인하여 점 간의 침범이나 점의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간의 변인을 6.1mm~

7.6mm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유브이(UV) 점자는 인지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타 매체에 비하여 인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급적 점자 자료를 제작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구형 점자로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 매체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⁶⁾

이번 연구의 한계는 시각 장애인 4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5개 매체 이외의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추후 더 많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간 변인에 따른 점 간의 간격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3. 결론

점자의 사용이 한정적이고 시각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기관(시각 장애인 관련 도서관이나 복지관, 학교 등)에서 제작되었던 과거 환경에서 벗어나, 일반 인쇄물 제작업체나 편의 시설 제작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각 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저품질의 점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선거 공보물이나 요금 고지서 등과 같은 경우 시각 장애인이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저급한 수준의 인쇄물을 양산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시각 장애인이 이동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점자 안내판이나 점자 표지판 등의 시설들이 잘못된 점자로 표기되어 있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또한 캔 음료나 일부 약품에 표기된 점자는 거의 읽을 수 없는 수준으로 작게 표기되어 있거나 높이가 매우 낮아 인지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6) 김영일(2016) 외,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점자 규격 표준 개발》, 국립국어원.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나 약품 정보, 안내문 등에 대한 점자 표기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표기의 여부만을 확인할 뿐, 규격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제작된 점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종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점자 관련 안내판과 점자 표지판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제정으로 교통 시설 및 교통편 등에 점자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나 권장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3조, 「우편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주민등록법」 제24조, 「화장품법」 제10조, 「저작권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제65조, 제66조 및 제153조 등 점자 표기의 법제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점자 자료 제작 관련 종사자들이 표준화된 점자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표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점자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하나로, 점자 규격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국립국어원에 점자 문자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인 특수언어진흥과가 신설되어 점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므로, 점자 규정뿐만 아니라 점자 규격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점자는 시각 장애인,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 활자 문자를 볼 수 없는 중증 시각 장애인에게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이러한 점자의 가치를 높이고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점자를 배우고, 익히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점자의 표준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영일(2016) 외,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및 사용자별 교육 과정 개발: 점자 규격 표준 개발》, 국립국어원.
- 강완식(2016) 외, 《시각장애인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의약품 구분 및 정보 제공 강화 실용화 모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누리집(<http://www.kbuwel.or.kr>)